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5
----------	-----

2019년 3월 6일
교 육 위 원 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1월 4일, 김경우 의원
2. 회부일자 : 2019년 1월 7일
3. 상정일자 :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
(2019년 3월 6일 상정·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경우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동법 시행령 및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,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재활용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의 주체를 감정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, 법령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의 처분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함(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9년 1월 4일 김경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15호로 발의되어 2019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'시행령'이라 함)의 개정에 따라 장부상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의 주체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75조¹⁾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²⁾에게 의뢰하여 평

1) 제75조(불용의 결정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(不用)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(이하 "불용품"이라 한다)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.

2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그러나 현행 조례 제17조제4항은 이와 같은 감정평가의 자격을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감정평가사를 배제하는 등 상위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,

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같이 감정평가의 자격을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감정평가업자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34.,2019.1.3.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. "토지등"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, 동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.
2. "감정평가"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(價額)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3. "감정평가업"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(業)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.
4. "감정평가업자"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감정평가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“이라 한다)” 을 “감정평가업자” 로 한다.

제17조제5항 중 “감정기관에서” 을 “감정평가업자가” 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(생략)</p> <p>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장부상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<u>감정평가법인(이하 “감정기관”이라 한다)</u>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<u>감정기관에서</u>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⑥~⑧ (생략)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장부상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<u>감정평가업자의</u>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<u>감정평가업자가</u>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⑥~⑧ (개정안과 같음)</p>